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성군수

## 1. 제안이유

고성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이용시간,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시설사용의 예약,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라. 시설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마.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예산 확보 계획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3984(2023. 9. 2.)]
- 물가조정심위위원회: 해당사항 없음[경제기업과-25918(2023. 5. 17.)]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388호
  - 가) 예고기간: 2023. 08. 30. ~ 2023. 09. 19.(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동절기”란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성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작일 15시부터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시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숲나들e(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10조 각 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반환 등)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기준	사용기준	요금(원)		비 고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	
숙박 시설	A(4인실)	1동/1박	60,000	80,000	
	B(6인실)		100,000	120,000	
	C(6인실)		100,000	120,000	

※ 비 고

1.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3.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명당 1만원을 징수한다. 다만, 7세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 1.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대상	대상기간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 월 24일까지) 및 주말	비고
1.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	
2. 고성군민		20%	20%	
3.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20%	-	
4. 국가보훈대상자		20%	-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li> <li>-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li> <li>-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li> <li>-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li> </ul>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9조제2항 관련)

유 형	반환 및 배상기준	비고
<p>□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li> <li>-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 당일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li> </ul>	
<p>□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li> <li>-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 당일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li>-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li> <li>-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li> <li>-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li> </ul>	
<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 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ul>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 나. 비용발생 요인: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및 기간제 채용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대상: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및 기간제 채용
- 2) 사업규모
  - 숲속의 집(2024년 7동, 2025년 12동, 2026~28년 17동 기준)
  - 세입: 약 15백만원(1동기준/예약률 50~60%)
  - 세출: 약 8백만원(1동기준) 관리운영비, 연 100백만원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4명: 약 25백만원 \* 4명 = 100백만원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105	180	255	255	255	1,050
세출	156	196	236	236	236	1,060

#### 다. 재원조달방안: 고성군 자체재원(군비)으로 조달

- 2024년 ~ 2028년 일반회계로 편성

작성자: 녹지공원과장 이 연 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본조신설 2015. 1. 20.][제목개정 2018. 2. 2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2021. 4. 6., 2023. 4. 11.>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